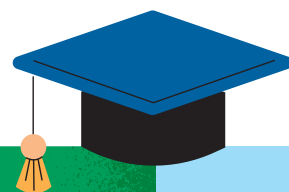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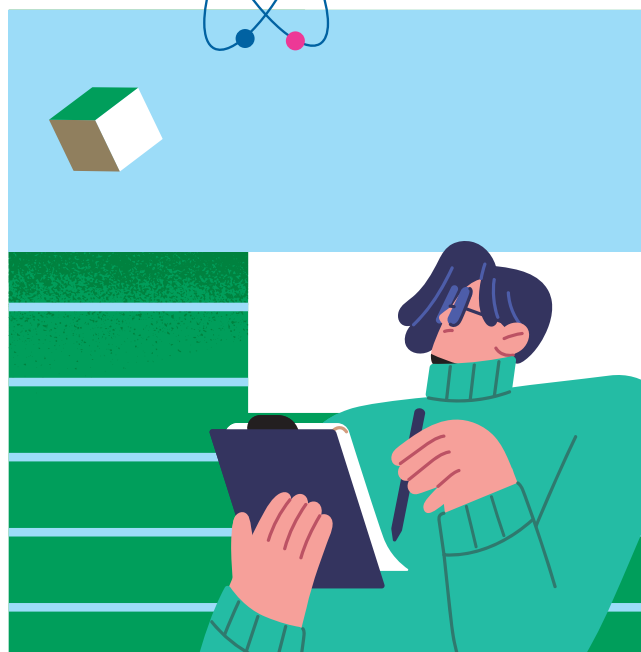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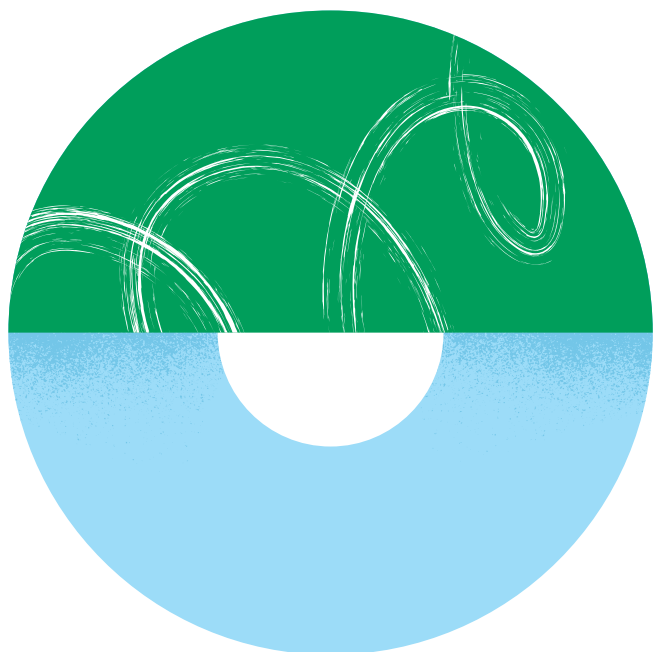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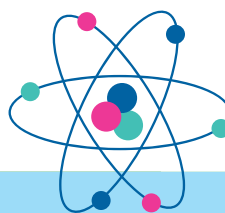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입학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contents

0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절차 p 11

0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p 12

03 전형일정 p 15

04 지원자격 p 16

QR코드를 스캔하고

더 자세한 입학정보 및 업데이트 사항을 확인하세요!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입학처 홈페이지



한국외대 유튜브

05 자격심사기준

p 17

09 전형료

p 24

06 전형방법

p 19

10 지원자 유의사항

p 25

07 제출서류

p 20

11 제출서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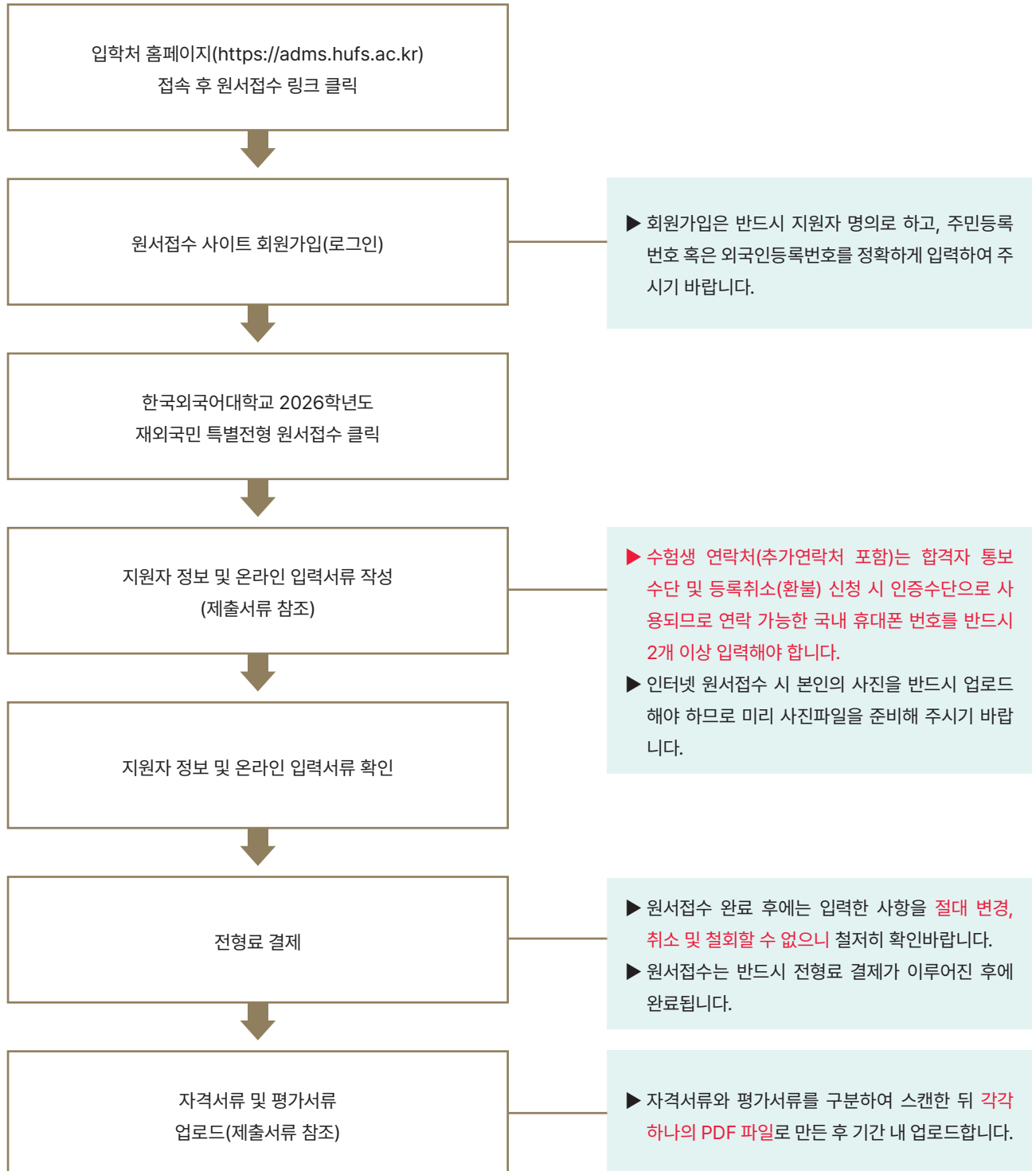
p 27

08 합격자 발표 및 등록

p 23

대입지원 유의사항

- 수시모집의 지원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됩니다.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도 수시모집에 해당하여 6회 산정 시 포함되므로 지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6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접수한 전형은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접수 취소처리 되오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혹은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각 전형당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는 각 전형당 캠퍼스와 관계없이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반드시 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정시모집,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입학할 학기가 같은 타 대학(교)에 이중 등록(등록예치금 납부 및 문서등록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모든 대학(교)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또한,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가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신청 절차는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 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캠퍼스	모집단위		모집인원 (명)	입학정원 (명)	최대선발인원 (명)
서울 캠 퍼 스	영어대학	ELLT학과	25	52	5
		영미문학·문화학과		52	5
		영어통번역학과		45	4
	영어대학[통합모집]			37	3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53	5
		독일어과		64	6
		노어과		34	3
		스페인어과		64	6
		이탈리아어과		23	2
		포르투갈어과		23	2
		네덜란드어과		23	2
		스칸디나비아어과		23	2
	핵심외국어계열			54	5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24	2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23	2
		태국학과		23	2
		베트남어과		23	2
		인도어과		23	2
		아랍어과		34	3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23	2
		페르시아어·이란학과		23	2
		몽골어과		21	2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열			24	2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21	2
	중국학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42	4
		중국어교통상학부		40	4
	중국학대학[통합모집]			21	2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37	3
		융합일본지역학부		27	2
	일본학대학[통합모집]			16	1
	AI융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49	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8	3
행정학과		38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46	4		
사회과학대학[통합모집]		31	3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40	4		
	경제학부	62	6		
상경대학[통합모집]		26	2		
경영대학	경영학부	130	13		
AI융합대학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49	4		
국제학부		29	2		
Language & Diplomacy학부		33	3		
Language & Trade학부		21	2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7	미선발		
	한국어교육과	20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	14			
	외국어교육학부(독일어교육전공)	14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14			
KFL학부		1	미선발		
자유전공학부(서울)		100	미선발		

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명)	입학정원 (명)	최대선발인원 (명)
글로벌 별 캠퍼스	인문대학	철학과	8	29	2
		사학과		29	2
		언어인지과학과		29	2
	인문대학[통합모집]			21	2
	국가전략언어대학	폴란드학과		26	2
		루마니아학과		26	2
		체코·슬로바키아학과		26	2
		헝가리학과		26	2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26	2
		그리스·불가리아학과		23	2
		중앙아시아학과		23	2
		아프리카학부		38	3
		우크라이나학과		20	2
		한국학과		20	2
	국가전략언어계열			52	5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54	5
		국제금융학과		23	2
	경상대학[통합모집]			19	1
	융합인재대학	융합인재학부		99	8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38	3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38	3
		글로벌스마트산업학부		38	3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통합모집]			30	3
	AI융합대학	Finance & AI융합학부		38	3
	자유전공학부(글로벌)			224	8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9	29	2
		통계학과		29	2
		전자물리학과		29	2
		환경학과		37	3
		생명공학과		37	3
		화학과		37	3
	자연과학대학[통합모집]			48	4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80		8	
	정보통신공학과	37		3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38		3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37		3	
	산업경영공학과	37		3	
바이오메디컬공학부		38		3	
공과계열		67		6	
AI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38		3	
AI융합대학[통합모집]		20		2	
기후변화융합학부		48		4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 고
전 모집단위 (사범대학 제외)	선발인원 제한없음	사범대학 제외 양 캠퍼스 전 모집단위 선발

※ 대학·계열 모집단위 및 자유전공학부 선택 가능 학과(부)

모집단위	선택 가능 학과(부)	
영어대학[통합모집]	ELLT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영어통번역학과	
핵심외국어계열	프랑스어학부,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특수외국어(유럽지역)계열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특수외국어(인도·아세안지역)계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태국학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특수외국어(중동지역)계열	아랍어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중국학대학[통합모집]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일본학대학[통합모집]	일본언어문화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사회과학대학[통합모집]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경대학[통합모집]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부	
자유전공학부(서울)	영어대학	ELLT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독일어과, 노어과, 스페인어과,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아시아언어 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태국학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아랍어과,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페르시아어·이란학과
	중국학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일본학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인문대학[통합모집]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국가전략언어계열	폴란드학과, 루마니아학과, 체코·슬로바키아학과, 헝가리학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아프리카학부	
경상대학[통합모집]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국제금융학과	
자연과학대학[통합모집]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공과계열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통합모집]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글로벌스포츠포츠산업학부	
AI융합대학[통합모집]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자유전공학부(글로벌)	인문대학	철학과, 사학과, 언어인지과학과
	국가전략 언어대학	폴란드학과, 루마니아학과, 체코·슬로바키아학과, 헝가리학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학과,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아프리카학부
	경상대학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국제금융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물리학과, 환경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반도체전자공학부(반도체공학전공), 반도체전자공학부(전자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 글로벌스포츠포츠산업학부
	AI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Finance & AI융합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융합인재학부, 기후변화융합학부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5.07.07.(월) 10:00 ~ 07.09.(수) 17:00	-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s.hufs.ac.kr)
온라인 입학서류 작성	2025.07.07.(월) 10:00 ~ 07.10.(목) 17:00	- 기간 내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단, 입학원서는 2025.07.09.(수) 17시까지 작성 가능) - 제출서류 참조
자격서류 및 평가서류 업로드		- 대상: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자격서류와 평가서류를 구분하여 스캔한 뒤 각각 하나의 PDF 파일(총 2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참조
자격서류 업로드		- 대상: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자격서류를 스캔한 뒤 하나의 PDF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참조
면접질문 사전공개	2025.07.11.(금)	-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adms.hufs.ac.kr)
면접영상 업로드	2025.07.14.(월) 10:00~ 07.16.(수) 17:00	- 대상: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정해진 기간 내 면접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면접고사 결시로 인한 불합격 처리
최초합격자 발표	2025.09.01.(월)	-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s.hufs.ac.kr) - 개별 통지하지 않음
최초합격자 문서등록	2025.12.15.(월) ~ 12.17.(수)	-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개별 통지하지 않음
추가합격자 발표	~ 2025.12.23.(화)	- 대상: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일시: 2025.12.23.(화) 18:00까지 -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기간: 2025.12.24.(수) 14:00까지 - 차수별 추가합격자 발표/등록기간 및 홈페이지 발표/ 개별 전화통보 여부는 2025년 12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등록금 납부	2026.02.03.(화) ~ 02.05.(목)	- 자세한 내용은 2026년 1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자격서류 및 평가서류 등 원본 제출	2026.02.25.(수)까지	- 대상: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중 최종등록자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원본서류 표지를 부착한 뒤 입학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상기 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반드시 원서접수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총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에게 추가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추가합격 시 안내되는 등록마감일까지 정해진 등록포기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1) 학력사항: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2) 부모의 자격요건(국외 근무 및 실체류기간)

구분	대상	국외 근무 및 실체류기간 자격요건	
국외 근무자	부모	국외근무 기간	아래 3)의 지원자(학생)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국외근무 심사 시 심사대상기간 3년을 정한 후 해당 기간만 심사)
		실체류	심사대상기간 3년 중 부모 모두 매년 2/3 이상 현지 실체류

3) 지원자(학생)의 자격요건

구분	대상	국외 재학 및 실체류기간 자격요건	
국외 근무자의 자녀	지원자	재학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3개 학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실체류	위 재학기간 중 매년 3/4 이상 현지 실체류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교육·연수·출장·자발적 선교 또는 국외취업 목적의 외국 거주는 제외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심사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재학기간 증명서류(성적증명서 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산정**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가. 공통사항

1) 학력인정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이어야 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비대면 강의 수강,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시 학력을 인정하지 않음

2) 학제인정기준

- 외국 교육과정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12학년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함

국가	학년제	학년											
		초						중			고		
국내	1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국외	12학년이하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13학년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3) 학기인정기준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를 이수 학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 간 전·편입 과정에서 수업일수의 결손이 발생한 학기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사일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학기의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재학기간은 필요한 경우, 학기 단위로도 인정함 (단, 학기 개시일 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재학하여야 함)
-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고 1년 교육과정이 3학기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수업 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이수 여부를 결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외국 학교의 재학이 계속되는 경우,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함(단, 국내학교로의 전학일자 이후의 방학기간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①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②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③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나.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1)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단,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 종교, 체제, 안전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고 본 대학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 외국고교 졸업 예정인 경우, 재학기간 산출은 졸업예정일까지로 함
- 3) 재직기간
 - 국외파견근무자: 국내 본사에서 발급된 파견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자영업자: 재직기간 및 법인세 혹은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이 중첩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현지법인 근무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승인 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함

다.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빠짐없이 이수하면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2) 학년제가 동일한 외국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함
- 3)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라. 기타

- 1) 고등학교 졸업시점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소지 시 지원이 가능함(졸업예정자 포함)
 -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한국외대의 학기 시작 시기인 3월 이전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2)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태국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우리대학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3)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고 본 대학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외국학교 자격인정 재학기간에 제3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도 인정함
-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따른 각종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 등에 대한 인정 여부는 함께 제출하는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본 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은 본 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전형요소	반영비율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서류평가	서류평가점수 100%(200점)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면접고사 (온라인 면접영상 업로드)	면접고사점수 100%(200점)

※ 해당 전형 서류 미제출자 및 면접영상 미업로드자는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

※ 국내 학교 재학 중 학교생활기록부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각 호수에 따라 전형 총점의 1%부터 전형 총점의 100%(과락, 사정 제외)까지 감점 처리

학교폭력 조치사항 적용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구분	내용	적용 방법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전형별 총점의 1% 감점
제2호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전형별 총점의 10%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전형별 총점의 20%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전형별 총점의 100% 감점(과락, 사정제외)
제9호	퇴학처분	

나. 선발방법

1)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서류평가 성적 순위에 따라 각 캠퍼스 계열별 모집인원만큼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모집단위 최다선발인원 이내에서 선발함(지원자격심사 미충족자는 선발하지 않음)
- 본 대학교에서 정한 수학 능력 기준에 미달이 되는 자는 선발하지 않음
- 평가방법: 2인의 평가자가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의 측면에서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율(%)	평가항목	
학업역량	30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학업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진로역량	50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공동체역량	20	협업과 소통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성실성과 규칙준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 동점자는 아래의 성적순으로 선발함. 아래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도 성적 총점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함

① 진로역량 성적 우수자 → ② 학업역량 성적 우수자 → ③ 공동체역량 성적 우수자

2)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면접평가 및 지원자격심사를 통해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지원자격과 수학능력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적정인원을 선발함

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서류명	필수	비고
1. 온라인 입력서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최종등록자만 별도 출력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1)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 - 2025.07.09.(수)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지원자격심사신청서	○	- 초·중·고 재학한 모든 학교와 기간 등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동기가 서명을 대체 (필요시 별도 서명본을 요구할 수 있음)
3) 외국학교조사표 및 학력조회동의서	○	- 2025.07.10.(목)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4)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	○	- 국문으로 작성 - 2025.07.10.(목)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2. 자격서류 (5~16의 서류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자격서류에 업로드)		
5) 초·중·고 재학증명서	○	- 재학기간(연/월/일까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6) 초·중·고 성적증명서	○	- 1페이지짜리 Transcript 혹은 학년별 School Report 형식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7)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졸업(예정)시점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합격 후 최종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8)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	- 국외에서 재학한 중,고교 모든 학년에 대한 학사일정표 필수 제출 -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학교 홈페이지 캡처본 가능 - 필요시 초등학교 학사일정표를 추가제출 요청할 수 있음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해당자에 한해 혼인관계, 입양사실 관련서류 추가제출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2025.06.0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0) 보호자 특정목적증명서류	○	- 국외 파견근무자: 국내 본사에서 발급한 파견국가와 파견기간이 명시된 재직(경력)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 현지법인 근무자: 법인등록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법인세납부이력 또는 개인소득세증명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11)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모두 제출 - 학생의 초등 6학년 재학 시작일부터 고교 졸업시점까지 출입국 기록 제출(부,모,학생 모두) - 2025.06.0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12) 여권 사본(부, 모, 학생)	○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 모두 제출
13)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청 발행 -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가능
14)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	
15)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부, 모)	○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참조
16) 사유서	해당자	
3. 평가서류 (17~18의 서류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평가서류에 업로드)		
17)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 증빙서류	○	-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은 2025.07.24.(목)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 제출서류 양식 참조
18)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의 경우 <u>자격서류와 평가서류에 각각 중복 업로드 필요</u>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서류명	필수	비고
1. 온라인 입력서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최종등록자만 별도 출력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1)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 - 2025.07.09.(수)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지원자격심사신청서	○	- 초·중·고 재학한 모든 학교와 기간 등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동기가 서명을 대체 (필요시 별도 서명본을 요구할 수 있음)
3) 외국학교조사표 및 학력조회동의서	○	- 2025.07.10.(목)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
2. 자격서류 (4~11의 서류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자격서류에 업로드)		
4) 초·중·고 재학증명서	○	- 재학기간(연/월/일까지)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5) 초·중·고 성적증명서	○	- 1페이지짜리 Transcript 혹은 학년별 School Report 형식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또는 국내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6)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졸업(예정)시점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합격 후 최종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요
7) 학사일정표	○	- 학사일정표는 초,중,고 모든 학년 필수 제출 -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학교 홈페이지 캡처본 가능
8)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모두 제출 - 학생의 출생일부터 고교 졸업시점까지 출입국 기록 제출 - 2025.06.0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9) 여권 사본(학생)	○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복수 국적이나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해당 여권 모두 제출 -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11) 사유서	해당자	- 제출서류 양식 참조

다. 북한이탈주민

서류명	필수	비고
1. 온라인 입력서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최종등록자만 별도 출력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		
1) 입학원서	○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완성 - 2025.07.09.(수) 17시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2. 자격서류 (2~3의 서류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자격서류에 업로드)		
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급
3)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가능 - 시·도 교육청 발급

라. 서류제출 공통사항

- 1)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의 경우, 자격서류와 평가서류를 구분하여 스캔한 뒤 각각 하나의 PDF 파일(총 2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합니다.
- 2)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격서류를 스캔한 뒤 하나의 PDF 파일(총 1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업로드합니다.
- 3)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업로드하지 못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합격자 중 최종등록자는 2026.02.25.(수)까지 스캔하여 업로드하였던 모든 원본서류(자격서류 및 평가서류 일체)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5)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공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6)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6.02.25.(수)까지 원본서류와 함께 최종졸업증명서, 최종성적증명서, 최종재직서류, 최종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지원자가 재학한 학교의 소재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인 경우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및 고교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가입국이거나 가입국이지만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한 재외국민은 해당 교육기관 발급서류에 한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없이 제출 가능
- * 중국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서울공자아카데미(<http://renew.kongzi.co.kr>, 02-554-2688)에서 중국 중·고등학교 관련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본 대학교에 제출 가능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안내

- 제출대상자: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 제출 관련 서류: 국외소재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성적·졸업증명서) 등
- 제출방법: 국외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당해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
- * **최종등록자는 2026.02.25.(수)까지 업로드한 서류를 원본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또는 영사확인)를 함께 제출**
- 문의처: 외교부 02-2002-0251, 0252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키르기스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최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은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참조

- 8)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자녀가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근무)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해당 기간은 재외국민 자격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하며 제출 후 인정 여부 심사 예정)
- 9)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기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재학기간(연,월,일까지)이 명시된 서류(등록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해당 국가의 법원 등에서 발급)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1) 국외근무자의 재직증명서에는 파견(근무) 국가와 파견(근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12)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 대상자는 재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02-3415-0173)
- 13)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14) **지원자격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에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활동보고서 증빙서류로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2025.07.24.(목)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합니다.
- 16) Score Reporting 방식에 의한 활동증빙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17) 활동보고서 증빙서류로 추천서는 제출하실 수 없으며,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 최초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분	일자	비고
최초합격자 발표	2025.09.01.(월)	입학처 홈페이지 (https://adms.hufs.ac.kr)
최초합격자 문서등록	2025.12.15.(월) ~ 12.17.(수)	

나.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1)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에 한해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합니다.
 - 추가합격자 발표 마감: 2025.12.23.(화) 18:00까지
 - 자세한 차수별 추가합격자 발표 방식 및 등록 일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선발방식 특성상 예비번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추가합격을 할 수 있으므로**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추가합격자 발표 관련 공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2) 입학원서에 기재한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언제라도 신속히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기재하며, 가급적 국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미기재 또는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별 전화통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전화충원 노력(최대 3회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은 추가합격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후 등록포기” 처리합니다.(정시모집,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 불가) 그러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2개 이상 입력하기 바랍니다. 국외 출국의 경우 전형 일정 및 안내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처로 통보해야 합니다. ☎ 02-2173-2500]

다. 등록포기 및 환불

- 1)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하며, 합격포기 및 등록 포기 요청 방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2) 본 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다른 수시모집 대학에 복수 지원하여 합격한 자 및 추가합격한 자가 본 대학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5.12.23.(화) 13:00까지** 입학처로 연락하여 등록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02-2173-2500]
- 3)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하여 환불합니다.
- 4)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환불업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5) 본인 및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포기 및 환불의 인증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 6)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에게 추가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추가합격 시 안내되는 등록마감일까지 정해진 등록 포기 절차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 전형별 전형료

구분	전형료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50,000원
북한이탈주민	50,000원

나. 전형료 감면

- 1) 감면대상: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 제출서류: 서류는 **2025.06.16.(월)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전형료 감면 신청서(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단,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 전형료 감면 신청서(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발급)

- 3) 제출기간: 2025.07.07.(월) 10:00 ~ 07.10.(목) 17:00
- 4) 제출방법: 모든 서류를 반드시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전형료 감면서류에 업로드하고,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제출 불가)해야 합니다.(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해야 서류제출이 완료됩니다.)
- * 주소: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02호 입학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 5) 감면처리방법: 전형별 전형료를 정상 결제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입력했던 계좌로 일괄 지급 예정(9월 중 예정)

가. 지원자 유의사항

1) 결제가 완료되어 접수(수험번호 생성)된 입학원서 및 전형관련서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 기재사항을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형료 환불규정 안내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된 입학원서는 철회하거나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 및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 진행이 불가능함을 사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천재지변, 전형일자 사후 변경 등)

환불신청시기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시점 이전	전형료 100%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마감일 포함) 3일 이내	전형료 50%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마감일 포함) 4일부터 전형 1일 이전	전형료 20% 반환
전형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별도 고사가 없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는 각 전형당 캠퍼스와 관계없이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본 대학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 지원자 또는 보호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전형료 환불계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입력하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만 가능합니다.
- 6)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 지원자격 심사결과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대학교에서 정한 수학 능력 기준에 미달이 되는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지원자 본인이 상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형 일정 및 기타 사항은 본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반드시 원서접수 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신입생 입학절차와 재외국민 특별전형 심사위원회에 따릅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 대학교 국제입학관리팀에서 별도 일정에 따라 선발합니다.(국제입학관리팀 ☎ 02-2173-2065, 2657 / 홈페이지 <http://international.hufs.ac.kr>)
- 제출한 전형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및 원본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작성요령

- 모든 기록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공통원서 작성시 외국인등록번호유무에 '무'를 선택하신 후 생년월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원서접수는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완료됩니다.
- 접수된 입학원서는 지원사실 철회 및 지원모집단위 변경 등의 수정 및 취소가 일체 불가능하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 및 외국학교 조사표 작성요령

- 지원자격 심사 신청서에서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순(연도순)으로 입력하며, 재학기간은 반드시 연월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학력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중심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학교 조사표는 외국 재학학교의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FAX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학력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불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지원서류 업로드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자격서류와 평가서류를 구분하여 스캔한 뒤 PDF 파일을 각각 업로드
-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자격서류를 스캔한 뒤 PDF 파일을 업로드
- 필수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등록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2026.02.25.(수)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제출, 미제출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종등록 후 원본서류 제출시 제출 시 **최종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원본서류 제출방법은 추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최종등록자 원본서류 제출 안내

- 제출방법: 원본서류를 등기로 제출(**방문제출불가**)
 - 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자격서류 및 평가서류
 - 나)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자격서류

※ 온라인입력서류 또한 출력하여 함께 제출

※ 주소: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102호 입학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 앞

- 제출기간: ~2026.02.25.(수)

구분	제출서류
졸업생	업로드한 원본서류 일괄 제출
졸업예정자	최종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보완하여 제출
원서접수 이후 최종 학기를 해외에서 재직·재학·체류해야 3년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관련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최종기간에 맞게 보완하여 제출

※ 해외 발급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필수

5) 기타 문의사항: 서울캠퍼스 입학팀 [☎ 02-2173-2500] 또는 adms@hufs.ac.kr

* 본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활동보고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합니다.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

[지원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지원 모집단위	학과(부)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

1. 활동보고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간 내 작성해야 하며 별도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제출 기간: 2025.07.07.(월) 10:00 ~ 07.10.(목) 17:00
2. 고등학교 재학 기간(고 1~3학년/10~12학년)의 활동 내역만을 기재하며, 그 외 기간의 활동은 평가에서 제외 됩니다.
3. 지원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활동보고서는 총 12개의 활동에 대해 주요 내용 1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5. 활동증빙서류는 A4 단면으로 20매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활동증빙서류가 20매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활동증빙서류 번역 공증은 총 20매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A4보다 큰 서류의 경우 A4 규격에 맞추어 축소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8. 활동증빙서류는 활동보고서에 작성한 번호 순서대로 스캔합니다.
9. 비문서 형태(CD, DVD, 책, 메달, 트로피 등)로는 제출 불가합니다.
10. SAT, TOEFL 등과 같은 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사실 검증을 위해 활동보고서와 제출하신 활동증빙서류 하단에 반드시 웹사이트 주소, ID, PW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외부 성적표의 경우, 2025.07.24.(목)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
11. Score Reporting 방식에 의한 활동증빙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활동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3. 활동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활동증빙서류 제목과 기관명에 한해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추천서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시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15. 활동보고서 및 활동보고서 증빙서류 일체에 지원자 개인의 감상평, 소감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 본인은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유의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
- ⇒ 본인은 제출한 활동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
- ⇒ 제출된 활동보고서 및 활동증빙서류 내용 중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 : ☐)
- ⇒ 제출된 활동증빙서류에 관한 정보 열람,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에도 이에 관한 정보의 열람,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동의 : ☐)

[활동보고서]

순번	활동증빙서류 제목	주요 내용	기관명, 홈페이지, ID, PW
1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2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3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4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5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6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7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8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9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10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11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12	(20자 이내로 기술)	(100자 이내로 기술)	

상기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만을 작성했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구분	□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초·중·고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지원 모집단위	학과(부)
전화번호1		전화번호2	

1. 해당 사유에 맞게 체크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의 결손 및 중복은 사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유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업로드)합니다.
4. 전형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유	☐ 학기결손	☐ 학기중복	☐ 월반	해당학교명	
	☐ 온라인수업	☐ 조기졸업	☐ 국내체류		
	☐ 기타 ()			해당학년/학기	

본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였으며,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 _____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위탁 동의서

(지원자 학부모 작성용)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 위탁하고 있으니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 성명(한글) : _____
2. 지원자 생년월일(년/월/일) : _____
3.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위탁 전형 :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4. 지원자격 관련 입력 또는 제출 서류 : 입학원서, 지원자격심사신청서, 외국학교조사표 및 학력조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여권사본(부, 모),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부모 재직 관련 서류 등 관련 제출 서류 일체
5.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비고
지원자가 제출한 위의 '지원자격 관련 입력 또는 제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항목 전체	입학전형업무 수행 (원서접수, 지원자격 심사 등)	10년	대학입학 전형관리 및 공정성 검증을 위한 보유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해 지원자격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항목	처리 위탁 목적	수탁자	보유기간
지원자가 제출한 위의 '지원자격 관련 입력 또는 제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항목 전체	입학전형업무 수행 (원서접수, 지원자격 심사 등)	입학원서 접수 대행업체, 자격심사 프로그램 업체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해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위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위탁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서명 또는 인)
모: (서명 또는 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약칭: 사실증명신청서, 약호:A322)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	--------------------------	---------------------------	-----------------------------	---------------------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Full Name)	연락처(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 포함 ☐ 미포함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address in English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 포함 Yes ☐ 미포함 No

체류지 영문표기 여부 Address in English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 . .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Purpose) 대학교 제출용(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Phone No.) 02-2173-2500	발급대상자와의 관계(Relationship to Principal) 재외국민전형 지원자와 대학교 재외국민전형 담당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OO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OO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OO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년(Year) 월(Month) 일(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본인은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hereby consent to the electronic verification of the applicant's required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exemption of fees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n case of refusal to consent to the verification by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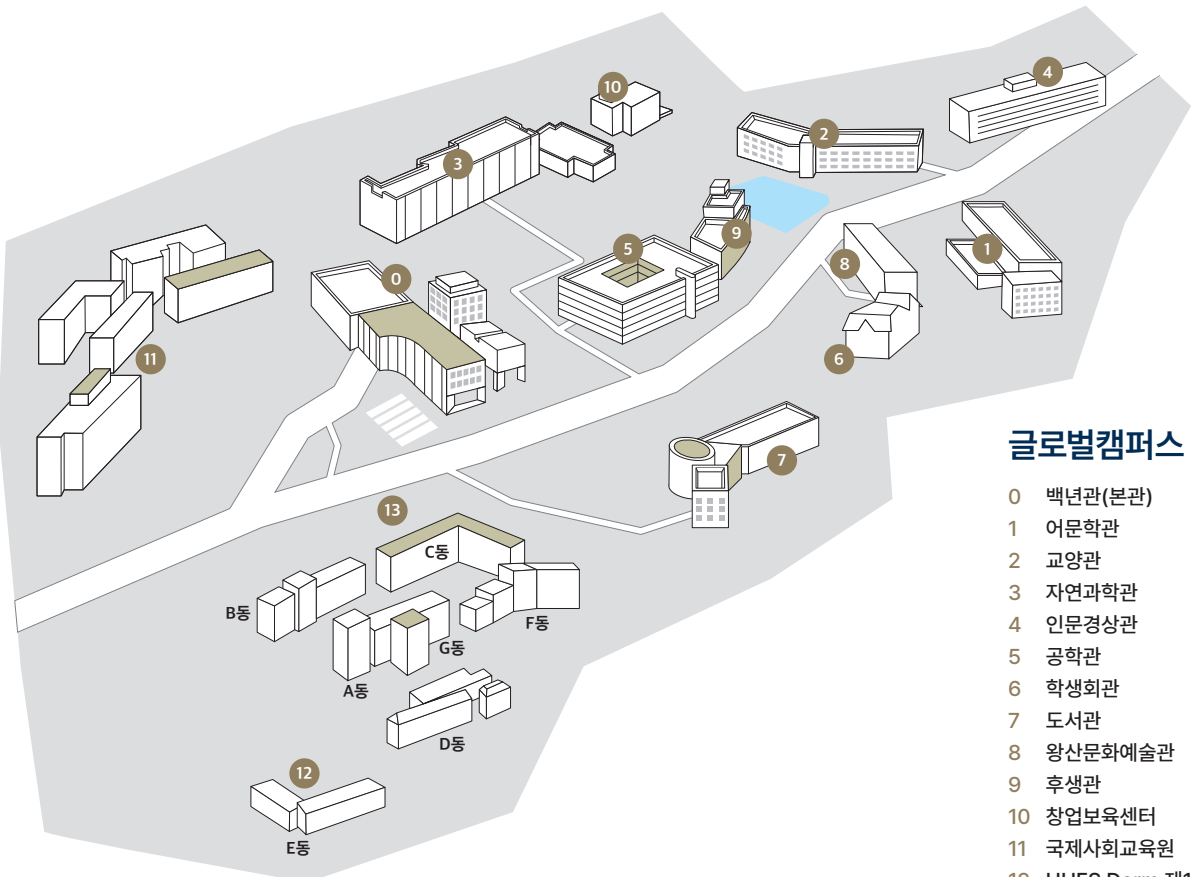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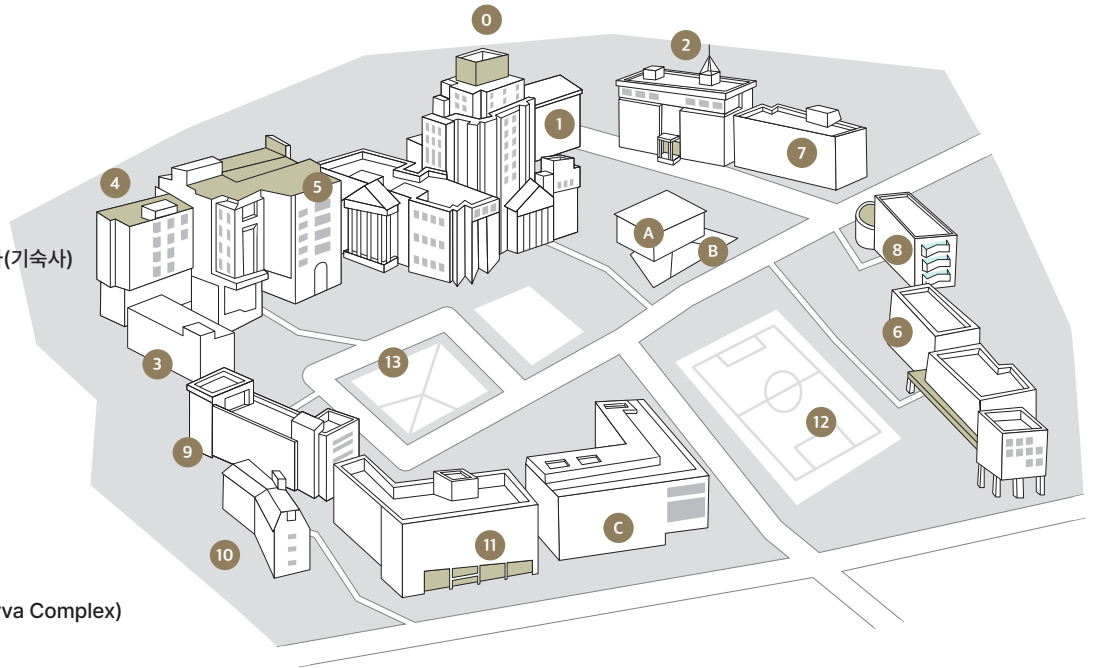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캠퍼스 맵 Campus Map

서울캠퍼스

- 0 본관
- 1 인문과학관
- 2 교수학습개발원
- 3 사회과학관
- 4 학생회관 및 국제학사(기숙사)
- 5 법학관
- 6 대학원
- 7 외국어연수평가원
- 8 국제관
- 9 도서관
- 10 교수연구동
- 11 교수회관
- 12 대운동장
- 13 잔디광장
- A 역사관
- B Obama Hall(Minerva Complex)
- C 사이버관



글로벌캠퍼스

- 0 백년관(본관)
- 1 어문학관
- 2 교양관
- 3 자연과학관
- 4 인문경상관
- 5 공학관
- 6 학생회관
- 7 도서관
- 8 왕산문화예술관
- 9 후생관
- 10 창업보육센터
- 11 국제사회교육원
- 12 HUFS Dorm 제1기숙사
- 13 HUFS Dorm 제2기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입학안내 문의

02-2173-2500

입학처 홈페이지

<https://adms.hufs.ac.kr>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